

##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인원 : 1,228명**

가. 제1회 임용시험(6.5.) : 1,168명

시험명	시험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인원	임용예정기관			
						인천시 및 8개 구(區)	강화군	옹진군	
<b>총 계</b>					<b>1,168</b>	<b>1,051</b>	<b>69</b>	<b>48</b>	
<b>소 계</b>					<b>1,137</b>	<b>1,020</b>	<b>69</b>	<b>48</b>	
제1회 임용시험 (6.5.)	공개 경쟁	8급	간 호	간 호	일 반	88	78	3	7
				행 정	일 반 행정	일 반	417	389	16
		세 무	지 방 세	장 애	36	28	3	5	
				저소득	19	15	2	2	
		전 산	전 산	일 반	23	20	3		
				장 애	8	7	1		
		사회복지	사 회 복 지	일 반	21	21			
				장 애	1	1			
				저소득	184	176	3	5	
		사 서	사 서	일 반	11	9	1	1	
				장 애	7	7			
		속 기	속 기	일 반	7	5	2		
				일 반	1	1			
		공 업	일 반 기계	일 반	11	9	2		
				일 반 전기	22	20	2		
				저소득	3	3			
		9급	일 반 화공	일 반	2	1	1		
				일 반 농업	9		6	3	
		농 업	일 반 농업	장 애	2		2		
				일 반	14	12	1	1	
		녹 지	산 림 자 원	일 반	1	1			
				조 경	1	1			
		해양수산	일 반 수산	일 반	9	3	3	3	
				일 반	58	56	1	1	
		보 건	보 건	장 애	2	2			
				일 반	23	19	2	2	
		환 경	일 반 환 경	장 애	2	2			
				일 반 토 목	84	73	7	4	
시 설	일 반 토 목	저소득	2	2					
		일 반	46	43	3				
		저소득	2	2					
방재안전	방 재 안 전	일 반	9	5	3	1			
		일 반	1			1			
방송통신	통 신 기 술	일 반	11	9	2				
		장 애	1	1					

시험명	시험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인원	임용예정기관			
						인천시 및 8개 구(區)	강화군	옹진군	
제1회 임용 시험 (6.5)	경력쟁	소 계				31	31		
		7급	수 의	수 의	일 반	12	12		
					일 반	7	7		
		9급	운 전	운 전	보훈청추천	6	6		
					수 의 연구	수 의	1	1	
연구사	보 건 연구	공 중 보 건	5	5					

나. 제2회 임용시험(10.16.) : 60명

시험명	시험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인원	임용예정기관				
						인천시 및 8개 구(區)	강화군	옹진군		
총 계					60	48	10	2		
제2회 임용 시험 (10.16)	공개 경쟁	소 계				15	15			
		7급	행 정	일 반 행 정	일 반	3	3			
			시 설	일 반 토 목	일 반	1	1			
		9급	시 설 관 리	기 계 시 설	보훈청추천	3	3			
					일 반	1	1			
				전 기 시 설	보훈청추천	2	2			
					일 반	2	2			
				화 공 시 설	장 애	1	1			
					보훈청추천	2	2			
		소 계				45	33	10	2	
		경력 쟁	9급	해양수산	선 박 항 해	일 반	1		1	
					선 박 기 관	일 반	1		1	
				의 료 기 술	의 료 기 술	임상심리	3	2	1	
						임상병리	5	5		
						물리치료	2	2		
치 위 생	2					2				
작업치료	3		1	2						
	공 업		일 반 전 기	일 반	1	1				
9급 (기술계고)	시 설		일 반 토 목	일 반	4	4				
			건 축	일 반	2	2				
	해양수산		선 박 기 관	일 반	1	1				
			시 설 관 리	기 계 시 설	일 반	2	2			
전 기 시 설	일 반		2	2						
	학 예 연구		학 예 ( 자 연 사 일 분 야 )	2		2				
연구사	농업연구	작 물	2		2					
	환경연구	환 경	9	9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3		1	2				

## 2 응시자격

### 가. 공통 응시자격

#### ○ 응시연령

구분(직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및 연구사·지도사	20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 ○ 거주지 제한

□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단, 아래의 경우 다음 응시요건을 따릅니다.

○ 연구사·지도사·7급 수의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음.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대상 중 인천광역시 내 소재한 고교를 졸업(예정)한 경우 거주지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인천광역시 외 타 지역 소재 고교를 졸업(예정)한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적용함.

○ 강화군 및 옹진군 응시자는 아래 해당 군의 주소지 요건을 따라야 함.

#### ■ 강화군

<행정, 세무, 사회복지, 농업, 녹지, 보건, 간호 직렬>

□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강화군 위 직렬(행정, 세무, 사회복지, 농업, 녹지, 보건, 간호) 외 직렬은 인천광역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따름.

#### ■ 옹진군

< 행정 직렬 >

□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옹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옹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옹진군 위 직렬(행정) 외 직렬은 인천광역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따름.

□ 참고사항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응시결격 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관련 [붙임 1] 참조

## 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의 직렬(직류)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라. 기술계 고교졸업(예정)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추천기준

-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고교(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임용예정 직무 분야별 관련학과 졸업자 및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이거나
- 인천광역시 외 타 지역에 소재한 고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임용예정 직무 분야별 관련학과 졸업자 및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자 중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을 충족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 응시연령 : 원칙적으로 18세(2003.12.31. 이전출생자) 이상이나, 원서접수일 현재 고교 3학년에 재학중이면서 2022년 2월 졸업예정자가 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조기 입학한 17세(2004. 1~2월)도 응시가능 합니다.

###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 ① 추천대상자(최종학력 : 고졸)

-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전문대 포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의 재학 및 휴학 등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추천 불가(단, 2021.1.1. 기준 대학 중퇴자는 추천 가능)
-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② 추천학과

-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14]의 '임용예정직렬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선발예정 직류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49호)」 [별표 2]의 '중 직무분야-관련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③ 학과성적 기준

-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기준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 학교장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치단체에서 학과 성적 기준으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유예한 경우

#### ④ 성적합산 기준

- ▶ (졸업자)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을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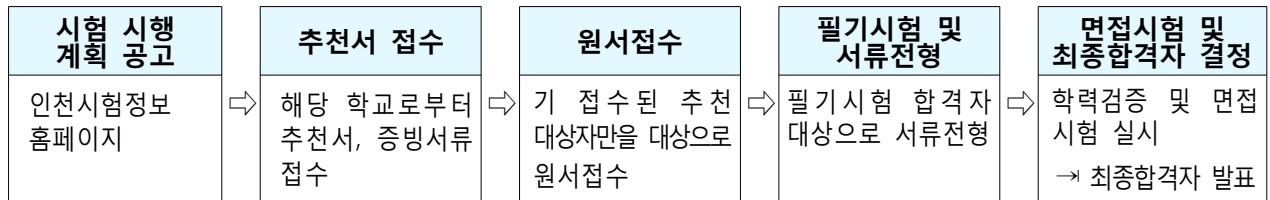
○ 추천서 제출

- 제출기간 : 2021. 6. 28.(월) ~ 7. 02.(금)
- 제출처 : 인천광역시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 제출주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인사과 인재채용팀(구월동)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 수험생 개인별 접수는 받지 않으며, 해당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으로부터 제출서류를 받아 추천기준 적합여부를 사전검증 후 제출기간 내 일괄 제출(생활기록부 상 대학 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재학 및 졸업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추천)

○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1부, 추천서 각 1부 [붙임 2 서식]
- 성적증명서 각 1부(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대학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 각 1부
- 생활기록부(사본) 각 1부

○ 시험단계별 절차



※ 관련학과 졸업자 중 응시희망자는 2021. 5. 31.(월)까지 해당학교로 추천 희망신청을 하여야 함.

○ 유의사항

- 학교장 추천을 받았더라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여야만 응시 가능하며, 추천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허위학력 기재 등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 규정에 따라 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합니다.
  -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 해당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보훈청 추천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인천보훈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은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에 따릅니다.
- 보훈청 추천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일반 모집과 중복 접수가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보훈청 추천을 받았더라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여야만 응시 가능하며, 추천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바.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릅니다.
  - 승차 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종에 ‘대형승합’ 이라고 기재된 차만 해당
-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 1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운전직렬 제출서류>

1.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1년 이상 운전 경력)
    -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는 [붙임 3 서식]으로 제출해야하며, 사업체에서 발행한 자체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붙임 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 ※ 위의 제출서류만으로 경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있음.

## 사. 자격 및 학력(경력) 제한

시험명	직급	직렬(직류)	자격 및 학력(경력)제한	비고
제1회 임용 시험	7급	수의 (수의)	수의사	
	8급	간호 (간호)	간호사, 조산사	
	9급	전산 (전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서 (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2·3급	
		시설 (시설)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운전 (운전)	<b>제1종 운전면허(대형)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b>	
	연구사	수의연구 (수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수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보건연구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시험명	직급	직렬(직류)	자격 및 학력(경력)제한	비고
제2회 임용 시험	9급	해 양 수 산 (선 박 항 해)	항해사 1급 내지 6급	
		해 양 수 산 (선 박 기 관)	기관사 1급 내지 6급	
		의 료 기 술 (의 료 기 술)	임상심리(임상심리사), 임상병리(임상병리사), 물리치료(물리치료사), 치위생(치위생사), 작업치료(작업치료사)	
	9급 (기술 계고)	공 업 (일 반 전 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 자	
		시 설 (일 반 토 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 자	
		시 설 (건 축)	건축(건축설비)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 자	
		시 설 관 리 (기 계 시 설)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 자	
		시 설 관 리 (전 기 시 설)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 자	
		해 양 수 산 (선 박 기 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과 관련한 특성화(마이스터고 포함) 졸업 (예정) 자	
	연구사	학 예 연 구 (학 예 일 반) 자 연 사 분 야	생물학과, 동물학과, 동물생명과학과, 수의학과, 축산학과, 동물자원학과, 생명과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농 업 연 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환 경 연 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지도사	농 촌 지 도 (농 업)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 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붙임 4 서식]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

※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렬은 대학(학부)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 석사학위증명서와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파란색은 인천광역시 자체출제과목임.

시험명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제1회 임용 시험	공개 경쟁	8급	간 호	간 호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9급	행 정	일 반 행 정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세 무	지 방 세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전 산	전 산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 회 복 지	사 회 복 지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 서	사 서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속 기	속 기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공 업	일 반 기 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 반 전 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 반 화 공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 업	일 반 농 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 지	산 림 자 원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조 경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 건	보 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 경	일 반 환 경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 설	일 반 토 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 재 안 전	방 재 안 전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 송 통 신	통 신 기 술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전문 연구사	7급	수 의	수 의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9급	운 전	운 전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연구사	수의연구	수 의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보건연구	공 중 보 건	보건학, 역학, 미생물학

시험명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제2회 임용 시험	공개경쟁	7급	행정	일반행정	공통(6) :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시설	일반토목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9급	시설관리	기계시설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전기시설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화학시설	국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물리, 선박일반, 항해	
	선박기관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의료기술		의료기술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경력경쟁 (기술계)	9급	공업	일반전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일반토목	물리, 토목일반, 측량
					건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해양수산	선박기관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시설관리	기계시설	한국사, 기계일반		
			전기시설	한국사, 전기이론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농업연구	작물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환경연구	환경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재배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 ◆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출제됩니다.
- ◆ (9급[고졸 포함] 경력경쟁 임용시험) 물리는 물리학 I, 생물은 생명과학 I,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속기직)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 2022년부터는 9급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 9급 공채 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제외 및 직렬(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 필수화

## 4

## 문제출제

-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직급	과목수	대상 과목
7급	11과목	국어(한문 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8·9급	37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9급경채 (고졸포함)	8과목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생물

※ (운전직) 사회 및 (시설관리직)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전기이론, 화학공학일반은 인천시에서 자체 출제합니다.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이외에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직급	과목수	대상 과목
7급 (경채)	3과목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연구사 지도사	16과목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보건학, 역학, 미생물학,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토양학
8·9급	13과목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수산일반, 수산경영, 공중보건, 보건행정,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시설관리직)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전기이론, 화학공학일반
9급경채 (고졸포함)	10과목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선박일반, 항해, 선박기관,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시설관리직) 한국사, 기계일반, 전기이론

## 5

## 시험방법

가. 제1차·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입니다.

시험명		직급(구분)	과목수	시험시간
제1회 임용 시험	공개경쟁	8~9급	5과목	100분(10:00 ~ 11:40)
		7급·연구사	3과목	60분(10:00 ~ 11:00)
	경력경쟁	9급 운전직	2과목	40분(10:00 ~ 10:40)
제2회 임용 시험	공개경쟁	7급	5과목	100분(10:00 ~ 11:40)
		9급	3과목	60분(10:00 ~ 11:00)
	경력경쟁	9급·연구사·지도사	3과목	60분(10:00 ~ 11:00)
		9급 시설관리직(기술제고)	2과목	40분(10:00 ~ 10:40)

※ 제1차 및 제2차 시험과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8, 9, 9의2 등에 따름.

##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차-제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 시 인·적성검사, 집단면접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3.29.(월) 09:00 ~ 4.2.(금) 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취소마감일 : 4.5.(월) 24:00까지]	필기시험	5.25.(화)	6.5.(토)	7.7.(수)
		면접시험	7.7.(수)	8.9.(월)~8.20.(금)	9.1.(수)
제2회 임용시험	7.5.(월) 09:00 ~ 7.9.(금) 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취소마감일 : 7.12.(월) 24:00까지]	필기시험	10.6.(수)	10.16.(토)	11.9.(화)
		면접시험	11.9.(화)	11.22.(월)~11.26.(금)	12.1.(수)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 (<http://gosi.incheon.go.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 7 응시원서 접수안내(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 가능
  -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단,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 취소는 취소기간 마감일 24:00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 및 취소 문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접수센터 (☎1522-0660)
- 기타사항
  - 응시수수료(8·9급 5,000원 7급·연구·지도직 7,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나.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사진파일은 촬영 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의 JPG형식, 용량은 100KB미만에 한하여 가능
  - 사진배경, 선글라스 착용, 측면사진 등 본인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록 불가

###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1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접수 가능)  
※ 인천광역시는 제1회 임용시험(6.5. 실시), 제2회 임용시험(10.16. 실시)이 해당됨

-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휴대)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취소) 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 응시직렬 및 임용예정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 해당 응시자 및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저소득층, 해당 직렬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사회복지직의 경우 원서접수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자격증취득예정일자(최종 면접일까지 유효함)를 입력하여야 함.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불합격 처리됨)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분실 시 재출력 가능함)
-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원서접수 시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장애인 편의제공 내용」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8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9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토플(TOEFL)		토익 (TOEIC)	텡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2018.5.12. 전 시험	2018.5.12. 이후 시험		
일반	530	71	700	625	340	65(level 2)	625
청각장애인	352	-	350	375	204	-	375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 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 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기준 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해당자는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나. 인정범위

- 2016.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 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6.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 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토플, 토익, 텡스, 지텔프)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시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 사전등록기간 : 토익, 텡스, 지텔프(자체 성적 유효기간 내 상시), 토플(자체 성적 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다. 성적제출 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함.
    - 추가 등록기간 : 2021. 10. 1.(금) ~ 10. 15.(금)

# 11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인정범위

- 2016.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 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국사편찬위원회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제출 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에 **사전 등록이 불필요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추가 등록을 해야합니다.  
- 추가 등록기간 : 2021. 10. 1.(금) ~ 10. 15.(금)

# 12

##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 5%	· 자격증 1개만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다. 의사상자 가산특전(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라. ‘나’ 항과 ‘다’ 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마.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공통 적용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19.6.18.)으로 2021년도부터 폐지

- 가산점은 직렬별로 아래와 같이 1개만 인정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직급/직렬	자 격 증	가산비율	
행정직군	6급이하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 회 복 지 (사회복지)	변호사	
기술직군 및 연구사·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5·7 참조[붙임 5]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만 적용됩니다.

### 가. 강화·옹진군 구분모집은 임용예정기관별 면접시험 실시

- 임용예정기관(군)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기관으로부터 임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공고는 임용예정기관(군)별로 시행하오니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이후의 절차는 임용예정 기관(해당 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별 문의처 : [붙임 7] 참조

※ 단, 연구사·지도사·7급은 인천시에서 일괄 면접 시행 및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예정기관별 임용

### 나.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필기시험 성적 확인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가능)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또는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는 반환하며,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답안지,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5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 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임용기관별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인재채용팀 ☎ 032-440-25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5 달라지는 시험제도 사전 안내

### 2022년부터 적용

-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고교과목 폐지 및 직렬별 전문과목 필수화
-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폐지

당 초	변 경
필 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선 택 : 전문2과목 + 고교3과목 + 행정학 중 2과목	필 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전문2과목 ※ 선택과목 폐지에 따른 조정점수제 폐지

- 9급 시설관리직렬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 조정(당해년도 채용이 있는 경우만 해당)
  - (당초) 하반기, 제2회 임용시험 → (변경) 상반기, 제1회 임용시험
  - ※ 단,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현재와 동일하게 하반기, 제2회 임용시험에 실시

### 2023년부터 적용

-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 변경

당 초	변 경 (2023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2023년의 경우)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u>졸업자 :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u> - 졸업예정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2023년의 경우)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